##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

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김윤덕ㆍ이원택ㆍ한병도

문진석 • 이연희 • 한민수

안규백 • 이춘석 • 소병훈

김교흥 • 윤준병 • 김재원

진성준 · 안호영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,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,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, 경제, 교육,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 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 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 임.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 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 도록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를 인정하 려는 것임.

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·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, 평생교육 및 영·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2조의2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2조의2(체류기간 상한 등에 관한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 관리법」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②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3편제4장제1절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7조의2(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설치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

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도지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학과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연한 단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 평생교육시민대학 에서 학습과정을 마친 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4편제2장에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0조의2(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례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 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역은 도조례로 정하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.
- 제90조의3(지역사랑상품권 특례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3조의2(영·유아보육에 관한 특례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제3항, 제7조제5항, 제15조, 제17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·제4항에서 대통 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	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
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	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
<u>&lt;신 설&gt;</u>	제42조의2(체류기간 상한 등에
	관한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
	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
	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국
	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고자 하
	는 외국인으로 도지사의 추천
	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
	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
	법」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
	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
	받은 외국인의 부모가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
	우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
	<u>있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제67조의2(평생교육 시범도시 지
	정 등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
	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
	<u>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</u>

- 지도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 지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 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 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- ⑤ 도지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학과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 연한 단축을 달리 정할 수 있 다.
- ⑥
   교육부장관은
   「학점인정

   등에
   관한
   법률」
   제7조에도

   불구하고
   대학과
   협의하여
   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 평생교육시민대학에서 학습과 정을 마친 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90조의2(이전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특례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 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 전하려는 경우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역은 도조례로 정하 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.

제90조의3(지역사랑상품권 특례)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은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13조의2(영・유아보육에 관한

특례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 제3항, 제7조제5항, 제15조, 제1 7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ㆍ제4 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